

울산광역시북구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94 호 2021. 6. 10.(목)

훈 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9호[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] 1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26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27호[하천 점용 협의(허가) 고시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28호[하천 점용 협의 고시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2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31호[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] 7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761호[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767호[공시송달 공고]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791호[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(인)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79호

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

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폐지이유

- 2021. 4. 29. 자 본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「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」 폐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26호

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·사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금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: 한국**공사 동**지사

나. 주소: 울산**시 *구 명촌**길 8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전주 1분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어물동 1240-61번지 일원

나. 면적

- 일시: 0.7㎡

- 계속: 0.13㎡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: 2021. 6. 4. ~ 2021. 6. 4.

계속: 2021. 6. 5. ~ 2025. 12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27호

하천 점용 협의(허가) 고시

「하천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창 평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**시 북**장(교통행정과)

나. 주소 : 울산**시 *구 산*로 1*1*(연암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(도로포장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창평동 1292-40번지

나. 면적 : 45㎡

5. 점용 협의 유효기간

- 2021. 6. 4. ~ 계속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28호

하천 점용 협의 고시

「하천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**시 북**장(공원녹지과)

나. 주소 : 울산**시 *구 산*로 1*1*(연암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점용(대규모 꽃단지 조성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명촌동 713-1번지 외 15필지

나. 면적 : 23,723㎡

5. 점용 협의 유효기간

2021. 6. 1. ~ 2022. 5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2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가대서길 56-15	가대동 802	2021. 6. 10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4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6. 1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31호

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명촌천, 연암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(주)대원에스** 대표이사 **식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**로 **-13(*촌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송전선로 매설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효문동 820번지

나. 면적 : 29.5m²(변경없음)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계속 : 2020. 10. 14. ~ 2024. 12. 31.(변경없음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-761 호

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”에 앞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6. 4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설치목적

-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

2. 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사업명 :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

4. 공고방법 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

5. 공고기간 : 2021. 6. 4. ~ 6. 24. (20일간)

6. 설치예정장소

설치예정장소	수 량	비고
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(최초설치 : 갯골2길2, 호계로239-12)	이동식 2대	

※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등

다. 제 출 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

라. 제출방법

○ 우편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(연암동)

○ 팩스 : 052-241-7809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바.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-241-7804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767호

공시송달 공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: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1. 6. 8. ~ 2021. 6. 22.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별첨 참조
4. 공시송달 내용

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부과담당관 (052-241-7542)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6월 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[별첨]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연번	대상자	주 소	세 목	반송사유	반송일자
1	정세*	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2길 22, 302호 (태전동)	취득세(부동산)	폐문부재	2021.05.25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791호

울산광역시 복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10일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·지정 확대를 위해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(2017.12.29. 공포, 2018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절차 신설(안 제2조의2)
 - 영업자가 특정장소에 대하여 영업장소 지정 직접 신청 및 신청서 제출

3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첨부서류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.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30일 18: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환경위생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제출방법

- 1) 전자우편 : lyh9877@korea.kr
- 2) 우편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환경위생과
- 3) 팩 스 : 052-241-7769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(052-241-778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조의2제9호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조의2제10호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제9호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5의2제10호”로, “이용”을 “사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”을 “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울산광역시 복구청장”을 “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영업장소 지정 신청)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

차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
별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

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성별	(남, 여)
	주소	전화번호		

신청사항	영업의 종류 []휴게음식점영업 []제과점영업
	신청 장소 []사유지 []기 타 ()
	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(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,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)

「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(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) 1부. 2.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

신청인

입지검토: 관계 기관·부서, 처리기관: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근거법규

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제42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(이하 “신고관청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9. 1., 2011. 8. 19., 2012. 1. 17., 2012. 5. 31., 2014. 8. 18., 2014. 10. 13., 2015. 8. 18., 2015. 12. 31., 2016. 6. 30., 2017. 12. 29., 2020. 12. 31.>

1. ~ 13. (생략)

1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·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식품판매 용도인 소형·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식품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(이하 “식품판매자동차”라 한다)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**별표 15의2**에 따른 서류

15. (생략)

② ~ ⑪ (생략)

[별표 15의2] <개정 2017. 12. 29.>

식품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(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)

1. 유원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(이하 이 호에서 "유원시설업 영업장"이라 한다)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(이하 이 표에서 "휴게음식점영업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(이하 이 호에서 "유원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또는 제 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
나.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
2. 관광지 등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이 호에서 "관광지 등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토지·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(이하 이 호에서 "시설운영자"라 한다)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나.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3. 체육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(이하 이 호에서 "체육시설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-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(이하 이 호에서 "민간체육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
-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민간체육시설업자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,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4. 도시공원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5. 하천: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가. 「하천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
- 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

-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(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)를 받은 자
- 1) 시·도지사
 - 2) 시장·군수·구청장
 - 3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6. 학교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학교"라 한다)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7. 고속국도 졸음쉼터: 「도로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8. 공용재산: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
- 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: 「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
9.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: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10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: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